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. 11. 24 선고 2015가단261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2015. 11. 10.

판결 선고2015. 11. 24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들은 각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(가)부분 지상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48.49㎡ 및 7, 8, 9, 10, 11, 12,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6. 25㎡,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60㎡ 및 부속된 화장실, 창고, 보일러실 등 일체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피고 B는 가항 기재(가)부분 지상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48.49㎡ 및 (나)부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6. 25㎡에서 각 퇴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C, D, E, F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나. 피고 G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조형우

별지